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65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정동만·엄태영·최은석

김위상 • 박정하 • 최형두

이인선 • 진종오 • 이종배

구자근 • 박성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 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48개월"을 "9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8개 월"을 "60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	제22조(구조금액) ①
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	
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	
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	
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	
균임금에 24개월 이상 <u>48개월</u>	<u>9</u>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2
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	
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	
월 이상 <u>48개월</u> 이하의 범위에	<u>60개월</u>
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